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거래 정보의 보고, 금리의 공시 및 지표금리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기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기 1년 이내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가. 콜거래

나. 환매조건부매매

다.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및 매매

라. 기업어음증권의 발행 및 매매

마.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및 매매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 중에서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및 매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금융회사 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 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콜거래"란 금융회사 등 간에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거래를 말한다.
4. "환매조건부매매"란 다음 각 목의 거래를 말한다.
 - 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행위
(이하 "환매조건부매도"라 한다)
 - 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행위
(이하 "환매조건부매수"라 한다)
5. "양도성예금증서"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은행이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하여 발행한 예금증서를 말한다.
6. "기업어음증권"이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말한다.
7. "전자단기사채"란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채무증권을 말한다.
8. "단기금융시장 금리"란 단기금융거래 정보 등을 기초로 산출된 금리로서 다음 각 호의 금리를 말한다.
 - 가. 콜금리
 - 나. 환매조건부매매 금리

다.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매매 및 호가 금리

라. 기업어음증권 발행, 매매 및 호가 금리

마.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매매 및 호가 금리

바. 코리보(KORIBOR)

사. 단기 코픽스(COFIX)

9. “코리보(KORIBOR)”란 은행간의 단기의 무담보 자금거래에 관한 호가 금리를 말한다.

10. “단기 코픽스(COFIX)”란 은행의 단기의 자금조달 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단기 자금조달비용 지수를 말한다.

11. “지표금리”란 금융계약 상의 채권·채무 가액의 결정, 금융상품 거래 가격의 산정 또는 성과의 측정 등에 사용되는 금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리를 말한다.

가. 공공 일반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해당 금리를 알 수 있을 것
나. 전체 또는 일부분이 미리 정하여 공개된 방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산출될 것

다. 기초자산의 가치 또는 가격(추정가격을 포함한다), 금융회사 등 간의 단기금융거래에서의 금리(호가 금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금리를 포함한다), 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금리 등을 기초로 하여 산출될 것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자금중개회사

제4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간의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⑨ 자금중개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 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① 자금중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416조는 자금중개회사에 준용한다.

③ 자금중개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제7조(적용범위) 이 장은 단기금융거래의 당사자 어느 일방이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단기금융거래의 당사자 어느 일방이 국가 또는 한국은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① 자금중개회사가 콜거래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그 콜거래에 관한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있는 증권의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거래에 관한 정보에 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환매조건부매매 정보
2.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및 매매 정보
3.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및 매매 정보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환매조

건부매매시장에서의 환매조건부매매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되는 단기 금융거래가 아닌 단기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그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거래에 관한 정보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고 업무의 절차 및 방법) ①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및 거래소는 제8조에 따른 보고 업무의 절차 및 방법, 보고 정보의 오류 통제 및 정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보고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및 거래소는 제8조에 따라 보고하는 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공시

제10조(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공시) ① 예탁결제원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단기금융거래 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단기금융시장 금리를 산출하고 그 금리와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거래에 관한 정보에 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환매조건부매매 금리

2.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및 매매 금리

3.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및 매매 금리

② 거래소는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환매조건부매매시장에서의 환매조건부매매 정보를 기초로 하여 환매조건부매매 금리를 산출하고 그 금리와 환매조건부매매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금중개회사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의 단기금융거래에 관한 호가를 제출받아 산출한 다음 각 호의 금리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양도성예금증서의 호가 금리

2.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의 호가 금리

④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합회”라 한다)는 코리보 및 단기 코픽스를 산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출·공시 대상 금리·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거래 정보의 제공) 예탁결제원은 금융투자협회가 단기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공시의 절차 및 방법) ①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는 제10조에 따른 공시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해상충방지기준)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는 제10조에 따른 산출·공시와 관련하여 그 기관, 소속 임직원, 정보제공기관(금리의 산출·공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콜거래 정보 및 콜금리의 공시) 콜거래 정보 및 콜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산출·공시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정한다.

제5장 관리대상 지표금리

제15조(적용범위) 이 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법」 제28조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금리 및 콜금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 및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표금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표금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등의 대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 사용되는 경우

2. 지표금리가 산출되지 않거나 시장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회사 등의 원활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대상 지표금리가 그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 해제에 앞서

금융회사 등의 지표금리 사용 현황, 지표금리 중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추가 지정 필요성 및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 유지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거래소로 하여금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지표금리 관리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상 지표금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대상 지표금리를 산출·공시하고 그 산출·공시의 절차 및 방법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지표금리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지표금리 관리기관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금리 공시의 절차 및 방법과 제13조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각각 관리대상 지표금리 공시의 절차 및 방법과 관리대상 지표금리 공시와 관련한 이해상충방지체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지표금리 관리기관의 지정도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 및 공시 과정을 점검할 수 있으며, 지표금리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렵거나 산출 또는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지표금리

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지표금리 관리기관, 정보제공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리대상 지표금리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
 2. 관리대상 지표금리 산출에 기초가 되는 금융상품을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조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
 4. 제17조제2항의 관리대상 지표금리 공시의 절차 및 방법 또는 관리대상 지표금리 공시와 관련한 이해상충방지기준을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
 5. 그 밖에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관리대상 지표금리를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그 지표금리에 연계되어 있는 금융계약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중단되는 경우 그 지표금리를 대체하여 사용할 다른 금리(이하 “대체금리”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체금리를 새로운 금융계약에 반영하는 절차 및 방법
3. 대체금리를 기존의 금융계약에 반영하는 기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장 감독 및 보칙

제20조(단기금융거래의 위험관리) ① 금융회사 등은 단기금융거래를 할 때 단기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콜거래를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금차입 및 자금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
 2.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의 담보비율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회사 등이 단기금융거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한국은행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의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의 투

명성·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거래소에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되는 정보 외의 만기 1년 초과 또는 양(兩) 거래 당사자가 금융회사 등이 아닌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매매,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의 발행·매매에 관한 정보 등 자료(금융회사 등이 아닌 거래당사자의 식별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3조(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검사)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1항의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회사 등의 이 법에 따른 업무의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1항의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및 은행연합회의 이 법에 따른 업무의 검사에 준용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1항의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지표금

리 관리기관의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4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자금중개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
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5조(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이 별표
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4.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임원이 별표 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 별표 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회사 등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제26조(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조치) ① 제25조는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및 은행연합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등”과 “별표 2”는 각각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및 은행연합회”와 “별표 3”으로 본다.

② 제25조는 지표금리 관리기관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등”과 “별표 2”는 각각 “지표금리 관리기관”과 “별표 4”로 본다.

제27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3. 제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제29조(벌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3.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5. 제22조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2조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자금중개회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7항제5호 중 “제355조제1항”을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355조부터 제359조를 삭제한다.

제444조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6호를 삭제한다.

22.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자

2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4.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제446조제5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5. 제338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49조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의2 중 “제350조, 제357조제2항”을 각각 “제3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7호 중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를 “제361조”로 한다.

[별표 1]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3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6.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경우
7.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8.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9.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9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경우
11.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1조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제21조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14. 제23조제2항제2호·제4호·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15. 제2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6. 고의로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그 보고 내용을 조작한 경우
17.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업무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

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1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별표 2] 금융회사 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5조의 규정 관련)

1. 고의로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그 보고 내용을 조작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8조제2항 각 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9조를 위반하여 조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조치 계획을 금융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동성 위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제2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6.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별표 3]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은행연합회 및 그 임직원
에 대한 처분 사유(제26조제1항의 규정 관련)

1. 고의로 제8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그 보고 내용을 조작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업무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3. 고의로 제10조를 위반하여 단기금융시장 금리를 산출하지 않거나 단기금융시장 금리와 단금융거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산출·공시 내용을 조작한 경우
4. 예탁결제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협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시 대상 금리·정보의 산출·공시 절차 및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3조를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7. 제2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8. 제2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별표 4] 지표금리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6조제2항의 규정 관련)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공시 절차 및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공시와 관련한 이해상충방지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6. 제2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